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환경부 (수소모빌리티혁신추진단)
연 월 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개정이유

한국환경공단이 설치·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차(전기자동차, 수소전기자동차 등)로 확대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도 전산망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게 하며, 저공해자동차 자금 보조 및 용자의 차등 기준,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, 설치계획 승인 등의 내용으로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28호, 2021. 04. 13. 공포, 2021. 07. 14. 시행)됨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주요 내용, 설치계획서 서식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국환경공단이 설치·운영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무공해자동차 전산망으로 확대하고, 전산망 설치·운영기관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추가함(안 제79조의8)
- 나.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자금 보조 및 용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(안 제79조의11 신설)
- 다.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포함 사항, 배치계획 수립시 고려사항, 배치계획 변경 절차 등을 정하며, 배치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, 배치계획 수립 즉시 공개·통보하도록 함(안 제79조의16 신설)
- 라.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서식을 규정함(안 제79조의17 및 별지 제36호의9 서식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의8의 제목 “(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·운영)”을 “(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국환경공단은”을 “한국환경공단 및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“한국자동차환경협회”라 한다)는”으로, “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”을 “포함하여 저공해자동차 중 법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(이하 “연료공급시설”이라 한다)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충전시설”을 각각 “연료공급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충전시설별”을 “연료공급시설별”로 한다.

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(이하 “한국자동차환경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한국자동차환경협회”로 한다.

제79조의15를 제79조의17로 하고, 제79조의11부터 제79조의14까지를 각각 제79조의12부터 제79조의15까지로 하며, 제79조의11, 제79조의16 및 제79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9조의11(저공해자동차의 자금의 보조 및 융자기준) 법 제58조제3항 제1호 후단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저공해자동차의 성능(연비, 주행거리 등) 및 판매가격
2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
3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 목표 달성 실적
4. 그 밖에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

제79조의16(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(이하 “수소연료공급시설”이라 한다) 배치계획(이하 “배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

1.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
2.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(이하 “수소전기자동차”라 한다) 보급 전망
3. 도심 및 고속도로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
4.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단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

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
2. 인구수, 소득수준,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

3. 다른 법령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

4. 수소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보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중기재정계획

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한 이후 3년마다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배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치계획의 변경절차는 법 제58조의10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1.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물량, 일정, 위치 등의 변경

2. 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

⑥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79조의18(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제출) 영 제5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”란 별지 제36호의9서식을 말한다.

별지 제36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0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(변경승인)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20일
설치 사업자 (신청인)	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(전화번호:)		
사업구분	[] 민간 보조사업	[]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	[] 기타()
시설구분	[] 고정식	[] 이동식	[] 기타()
충전대상 구분	[] 일반(승용차)	[] 특수(버스, 화물차 등)	[] 기타()
설치용도	[] 상업용	[] 연구용	[] 기타()
설비규모	충전용량 kg/hr	동시충전 가능 차량대수 대	
수소연료 공급방식	[] 튜브트레일러	[] 현장생산 공급	[] 가스배관 연결 [] 기타()
설치 비용 (건축포함)	천원		
부지조건	부지위치(주소)		
	지목	용도지역	
	용도지구	용도구역	
	부지면적 m ²	건축면적 m ²	
	건폐율 %	연면적합계 m ²	
	연면적 합계(용적률 산정용) m ²	용적률 %	
사업기간	~ (개월)		
변경사유			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의11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7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(변경승인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·지방환경청장
수도권대기환경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

※ 신청 시 첨부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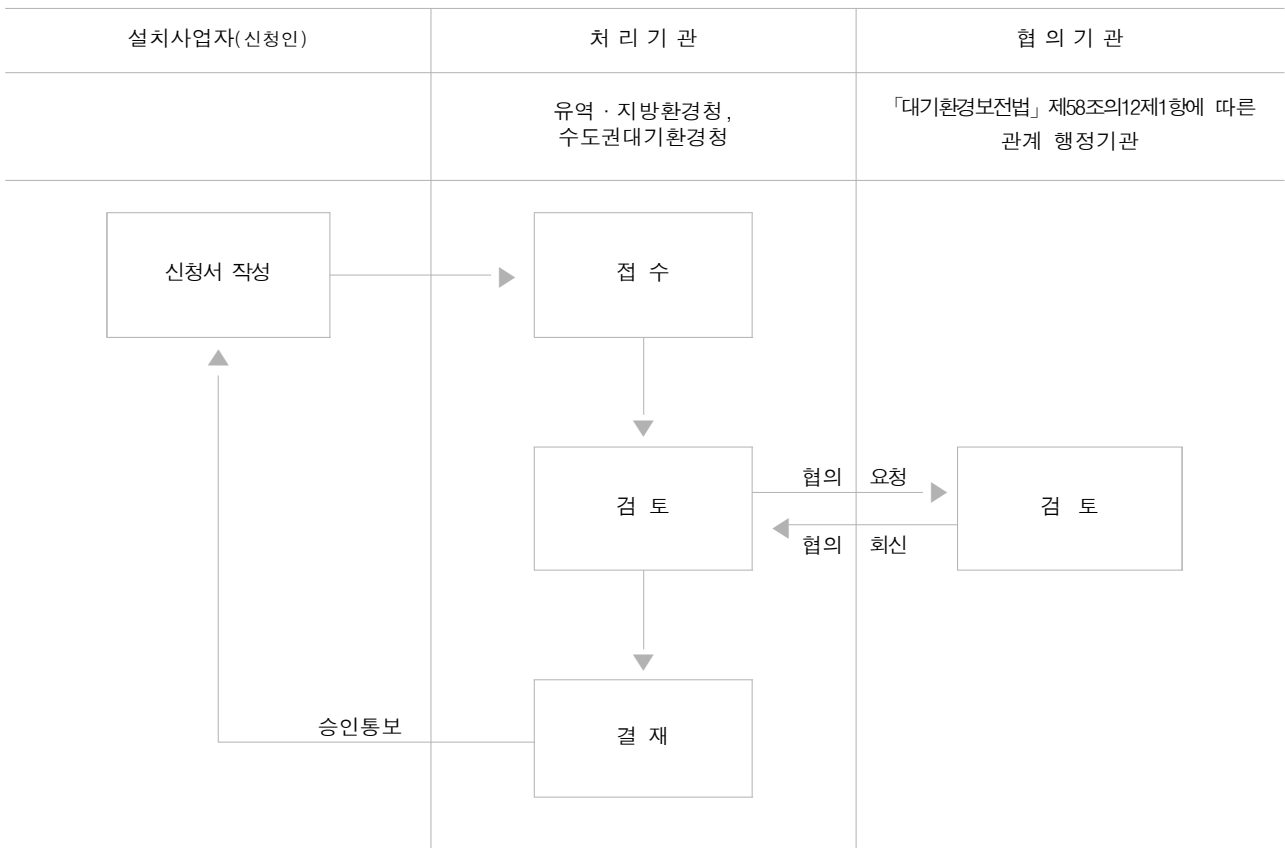
1. 공사 설계도서(위치도, 평면도 등)
2. 공사 예정표
3. 자금계획서(자금투자계획 및 자원조달계획을 포함)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
5.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
※ 인·허가 의제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

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인·허가 의제를 받고자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9조의8(<u>전기자동차 충전 정보 관리 전산망의 설치·운영</u>) <u>한국환경공단</u>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<u>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</u>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1. <u>충전시설</u>의 위치 및 상태 2. <u>충전시설</u>의 종류 3. <u>충전시설</u>의 충전횟수 및 충전량 4. <u>충전시설별</u> 결제정보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간의 요금정산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)	제79조의8(<u>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·운영</u>) <u>한국환경공단</u> 및 법 제78조에 따른 <u>한국자동차환경협회</u>(이하 “<u>한국자동차환경협회</u>”라 한다)는 --- <u>포함하여 저공해자동차 중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</u>(이하 “<u>연료공급시설</u>”이라 한다)의 ---. 1. <u>연료공급시설</u>----- 2. <u>연료공급시설</u>----- -- 3. <u>연료공급시설</u>----- -- 4. <u>연료공급시설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제79조의9(전기자동차 충전시설
의 설치·운영) ① 한국환경공
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
자동차환경협회(이하 “한국자
동차환경협회”라 한다)는 법 제
58조제17항에 따라 다음 각 호
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
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제79조의9(전기자동차 충전시설
의 설치·운영) ① -----
----- 한국자동차환경협회 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9조의11(저공해자동차의 자금
의 보조 및 융자기준) 법 제58
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“환경
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
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저공해자동차의 성능(연비,
주행거리 등) 및 판매가격

2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
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
여부

3.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
자동차판매자의 연간 저공해
자동차 보급목표 달성 실적

4. 그 밖에 자금의 보조 및 융자
를 차등적으로 하기 위해 환
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
하는 기준

제79조의11 ~ 제79조의14 (생략)

<신 설>

제79조의12 ~ 제79조의15 (현행 제79조의11부터 제79조의14까지와 같음)

제79조의16(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 수립)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(이하 “수소연료공급시설”이라 한다) 배치계획(이하 “배치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.

1.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
2. 영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(이하 “수소전기자동차”라 한다) 보급 전망
3. 도심 및 고속도로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
4.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단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

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전국 자동차 보급 현황
2. 인구수, 소득수준, 도로망 등 지역적 특성

3. 다른 법령에 따른 수소연료

공급시설 설치계획

4. 수소전기자동차 및 수소연

료공급시설 보급 관계 중앙행

정기관의 중기재정계획

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한 이후 3년마다 사회적·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배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치계획의 변경절차는 법 제58조의10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.

1.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목표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물량, 일정, 위치 등의 변경

제79조의15 (생략) <u><신설></u>	2. <u>단순한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</u> ⑥ <u>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</u> 제79조의17 (현행 제79조의15와 같음) 제79조의18(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 제출) 영 제5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<u>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</u>”란 별지 제36호의9서식을 말한다.
--	---